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과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수신: 제 인권·교육·사회단체와 관심 있는 개인

발신: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단체들

제목: 경기도학생인권제정을 위한 공동행동과 간담회 제안서

날짜: 2010년 2월 10일(수)

담당: 박진(다산인권센터/017-268-0136),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017-214-3550), 청소년인권  
활동가네트워크(공현/010-2840-3328)

1.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바라는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입니다.

2. 오늘 오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최종안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최종안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된 초안에서 놓친 부분들을 보완하는 한편, 보수 단체와 언론에 의해 논란을 빚었던 대부분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6조)와 집회의 자유(17조)에 관한 조항의 경우는 A안과 B안 두 가지 안을 준비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이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교육청 자체 심의 후 조례안 확정 → 교육청 입법예고(20일간) → 조례안 발의와 도교육위원회 제출 → 도교육위 심의·통과 → 도의회 심의·통과라는 만만치 않은 여정을 밟아야 합니다.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 당사자에게는 존엄성과 인권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역사적 계기를, △우리 교육에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동행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를, △우리 사회 진보의 미래에는 단비와 같은 구실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안이 교육청 내부 검토 과정에서부터 후퇴될 수 있고, 도교육위 통과라는 첫 번째 공식 관문에서 좌초될 우려도 큼니다. 조례 제정이 결국 좌초되더라도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모아나갈 때, 변화의 밑거름이 다져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에 저희들은 다음 2가지를 개인·단체들에게 요청 드립니다.

### 1)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해 주십시오!

- 자문위원회가 최종안을 전달하였지만, 경기도교육청 안팎에서 조례안을 후퇴시키거나 보류하도록 만드는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안팎의 상황에도 김상곤 교육감이 꺾대 있게 조례 제정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압력을 조직해야 합니다.

- 성명의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회의 최종안이 일정 정도 한계가 있지만 환영한다 △자문 위 최종안이 조례안의 최저선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은 이 안 이상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는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올 6월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서 후보들의 공동 공약으로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등이 되면 좋겠습니다. (※ 참고할 성명서 초안은 첨부파일 참조)

☞ 발표한 성명은 각 언론사와 경기도교육청에도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교육감 전자우편 : gyunggi@goe.go.kr

□ 경기도교육감실 팩스 : 031-258-8827

## 2) '학생인권조례와 교육감 선거' 대응 간담회에 참여해 주세요!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어떤 후속 활동이 필요할까요? 경기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변화를 일구어내기 위해 올 교육감 선거와 학생인권조례를 연계시켜 대응할 방안은 없을까요?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 때: 2월 25일(목) 오후 2시

- 곳: 경기 민연련 강당(수원 장안문 농협 뒤)

### [간담회 주요 안건]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현황 공유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위한 후속 활동 논의

□ 6월 교육감 선거 관련 각계 활동 공유

□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국 공동 공약화 등 교육감 선거와의 연계 방안

[간담회 장소 찾아오시는 길] ☞ 약도 확인 <http://ggccdm.tistory.com/notice/8>



※ 첨부자료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 최종안
2. 참고할 성명서 초안